



국 토 교 통 부



수신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대지 내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의 영업신고 관련)

1. 경기도 건축디자인과-4029호(2021.2.24.)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건축물이 아닌 대지내의 공작물(제83조 위반)인 경우, 제79조제2항에 따라 동일 대지 내 일반건축물에 대한 영업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 「건축법」 제79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에도 해당 조항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사례가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대지 내 위반공작물로 인하여 대지의 조경면적 훼손이나 공개공지 미확보 등 일반건축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사항이 함께 발생하였다면, 이를 단순히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당 공작물에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지 전체가 건축법 위반의 상태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등을 조사하여 건축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최인예

행정사무관

이형주

건축정책과장

전결 2021. 4. 2.

김성호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3351

(2021. 4. 2.)

접수 건축디자인과-6941

(2021. 4. 5.)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418호 건축정책과

정부세종청사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757

팩스번호 044-201-5574

/ ciyy2105@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